

산업별 경쟁촉진대책(발췌)

—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—

I. 추진경위

1. 정부규제 완화의 필요성

- 그동안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물가안정, 국내산업의 보호육성, 국민보건위생 등 각종 정책목적을 위하여 국민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불가피

〈법령에 의한 경제분야 정부규제의 예시〉

(업종수)

参入 규제	가격 규제	설비 규제	지역 한의 승인	개별사업의 승인	형식·품질 승인	기타
84	26	10	8	20	41	49

〈註〉: 89개 업종(54개 법률)에 대한 사례조사

- 이러한 정부규제와 개입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으나, 경제규모확대와 민간경영능력신장등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가운데 많은 부분이 민간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민경제전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최근 우리경제의 자율화·개방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특정업계를 보호하고 기업간 경쟁을

제한하던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절실

• 이와같은 기본인식 아래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과 대외개방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체계적인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를 추진

—우선 88년부터 경제체계한요인이 많은 11개 주요 산업에 대하여 參入제한,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존속이 타당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

2.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의 기대효과

-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창달에 기여
 - 경제체계한요인의 해소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도모
-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대외개방에 효율적 대응
 - 민간기업간의 경쟁체제확립으로 과거 정부지원에의 의존성향에서 벗어나 기업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

- 나아가 기술혁신에의 노력을 유도
- 아울러 물가의 구조적 안정 및 대외경쟁력 향상에 도움
- 신규参入 확대 및 설비 신·증설제한의 완화로 생산적 투자를 유도
- 배분의 형평성 실현
 - 各 경제주체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평한 배분 도모
- 소비자선택의 자유확대에 따른 후생증대

3. 추진경위

- 경쟁촉진대상산업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(88.4)
 - 국민경제상 비중이 크고 경제한요인인 많은 23개 산업에 대한 경제제한 실태조사
- '88년중 추진할 11개산업 선정('88. 5)
 - 연탄, 주류, 의약품, 농약, 배합사료, 콩관련식품, 제분, 정보통신, 정유, 화물자동차운송, 농기계
- 산업별 연구분석을 위하여 학계전문가와 공동작업반 구성('88.7)
 - 농기계산업은 농기계가격자율화등 경쟁촉진대책을 '88년중에 수립완료함에 따라 10개산업을 대상산업으로 함.

- 산업별 공청회(KDI 정책협의회) 개최('88.11~12)
 - 학계, 민간업계,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
- 경제 현안과제해결을 위한 12개 특별대책반중의 하나로서 경제기획원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「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」을 구성('89. 1)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계획의 수립 추진
 - 공정거래차원의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대책수립을 위하여 「경쟁촉진부문대책반」구성
- 「경쟁촉진부문대책반」 1차회의('89.1.20)
- 각부처로부터 소관산업별 경쟁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출받음(2.9~3.7)
- 산업별 경쟁촉진대책에 대하여 각부처별로 협의 및 조정(3.20~4.14)
- 「경쟁촉진부문대책반」(반장 : 공정거래실장)에서 최종 실무협의(5.13)

II. 향후추진계획

- 「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」(반장 : 경제기획원 차관)에 상정 확정(5.26)
- 대통령 보고(5월말)

〈10개 산업별 경쟁촉진시책의 주요내용〉

주 요 경 쟁 촉 진 시 책	
1. 연 탄	연탄공급구역제한 완화(93년 폐지), 연탄제조업 허가제 완화, 연탄품질 및 규격의 다양화
2. 주 류	용기, 포장, 표시 등에 대한 규제완화(89년 상반기중), 소주 自道酒 구입의무제도개선, 주류도매업 신규면허의 단계적인 허용 확대등
3. 精 油	精油業 시설개조허가제 폐지(89년중)등 허가제 완화, 주유소 거리제한완화(89.3)등 유통구조개선, 유가관리제도개선, 수출입부문 규제완화
4. 농 약	농약제조업 허가제 완화(93년 폐지), 농약수입업체허가제완화(92년 폐지), 농약완제품 수입허용(93년 완전개방), 고유상표사용 제한 폐지(92년중)
5. 배 합 사 료	飼料工業新設 許可制 廢止(91년), 飼料穀料의 輸入쿼터제 緩和
6. 콩 식 품	大豆粕 수입제한 폐지(91년), 대두유·대두박 제조업의 허가제 폐지
7. 제 분	소麦수입쿼터제 폐지(90년), 제분시설변경등의 승인제 완화, 제분업체허가제의 단계적 완화
8. 의 약 품	의약품 수입추천제 폐지(88. 12), 표준소매가제도 개선(91년 실시)
9. 화물자동차운송	사업구역제한 완화, 구역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완화(93년), 노선화물운송규제 개선
10. 정 보 통 신	정보통신서비스업의 참여제한 완화,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사업영역 규제완화, 통신회선의 사용제한 완화

- 확정된 경쟁촉진대책은 각부처별로 홍보
- 경쟁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실천상황 점검을 위하여 「경쟁촉진부문대책반」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
-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책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

〈参考〉 '89년중에 신규로 수립할 경쟁촉진대책 추진일정

- 이미 추진한 10개산업에 이어서 '89년중에도 10개내외의 산업에 대하여 경쟁촉진시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
 - 대상산업 확정 및 공동작업반 구성(6월중)
 - 일부산업에 대한 1차 공청회 개최(6월중)
 - 부처간 실무협의(8월중)
 - 나머지 산업에 대한 2차 공청회 개최(9월중)
 - 부처별로 소관산업의 추진계획 작성(10월중)

III. 산업별 경쟁촉진대책

1. 연탄산업

(1) 연탄공급구역제한의 완화

- 연탄공급구역제도는 '73년 제1차 石油波動의 여파로 연탄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제한된 물량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분·공급하기 위하여 시행
- 최근 연탄소비감소등 석탄수급상황의 호전으로 공급구역제도가 「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보호」 목적으로 변질된데다 일부 독과점 공급구역에서는 제품선택제한에 대한 소비자불만 야기
- 이에 따라 종전 63개 공급구역을 23개 구역으로 광역화('89.4.25 동자부고시개정, 5.15 시행)
 - 독점공급구역은 인접구역과 통합
 - 가격이 인접구역과 평준화된 지역은 공동공급구역화
- 공급구역의 일시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계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급구역을 폐지할 방침
 - 전국을 8~10개 圈域으로 구분하여 道單位로 광역화(91년중)
 - 공급구역제한을 전면 폐지(93년중)

- 공급구역제한의 완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연탄제조업간의 경쟁촉진으로 품질향상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업계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

(2) 연탄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

- 현행 석탄산업법상 연탄제조업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, 신규참입제한에 따라 기존 사업양도에 있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상존
- 앞으로 석탄산업법 개정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신규참입제한을 완화
- 연탄산업이 사양화추세에 있어 많은 신규참입은 예상되지 않으나, 실효성이 없는 정부규제의 존속에 대한 민간의 불만해소 기대 가능

(3) 연탄최고가격제의 폐지

- 연탄은 국민생필품으로 1號炭(3.6 kg)에 대하여 최고가격제를 실시
- 공급구역제한의 철폐없이 최고가격제를 폐지할 경우, 지방의 연탄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93년 공급구역제한 철폐후 최고가격제 폐지를 검토

(4) 연탄품질 및 규격의 다양화

- 현재 연탄의 종류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
- 기존 5개규격외에 소비자에게 편리한 품질좋은 신규연탄을 보급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90년중에 추진

2. 정유산업

•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

-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가격 및 이윤, 新·增設, 신규참입, 수출입, 유통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서 석유사업법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가 직접 규제

• 경쟁촉진대책

개선과제	실적 또는 추진계획	기대효과
[石油精製業 허가제 완화]		
• 시설개조허가제 폐지	• 89년 시행 실시	• 精油社의 자율경영 확대
• 증설허가제폐지 및 신규참입 자유화	• 단계적 추진(90년 이후)	• 수요변동에 따른 적기공급 • 수요추세에 따른 적기투자 유도 • 자원의 적정배분 • 산업구조의 왜곡 해소
[流通構造개선]		
•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	• 89년 3월 실시 · 서울 1km → 700m	• 주유소간 경쟁효과가(서비스등) 소비자에게 전달
• 석유판매업규제 완화	• 90년 이후 단계적 추진 · 대리점판매지역제한 폐지 · 주유소의 정유사와 직거래제 도입	• 거래의 자유화로 가격경쟁 유도 및 소비자 혜택
[油價管理制度 개선]		
• 나프타가격의 자율화	• 89년 3월 실시	• 石油化學製品의 경쟁촉진 및 적정가격유지
• 국내油價를 국제油價에 연동하여 고시	• 90년 이후 실시	• 유종간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현상 해소(국제가격에 비해 경질유는 높고 중질유는 낮음)
• 소비자告示制 폐지	• 90년 이후 폐지	• 石油化學製品 생산에 과다투자 방지 • 최고가격지정폐지로 소비자이익증가
[石油수출입부문 자율화]		
• 石油추천대상의 확대 · 현행 석유정제업자외에 부산물인 石油製品의 생산자추가	• 89년 상반기	• 石油화학분야(나프타)의 수급 애로 타개
• 수입추천대상의 확대 · 현행 石油精製業者외에 대량 수요처 및 정유사 공급 수출입업자 추가	• 89년 상반기	• 경쟁여건 기반조성으로 石油類製品 수급 원활
• 나프타 및 윤활기유 수출입의 자유화	• 89년 상반기	• 가격안정화에 기여 및 생산의욕 고취
• 수출허용요건의 완화 · 수급상 지장이 없고 제품간 수급불 균형시라는 요건을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완화	• 89년 상반기	• 불필요한 요건의 정비로 행정절차 간소화
• 임가공원유 및 현물도입승인제의 폐지	• 89년 실시	• 석유류의 수급안정에 기여
• 분기별 수입계획 신고제 폐지	• 89년 실시	• 적기에 찬 값으로 도입
• 原油도입 및 수출추천제, 수입추과제는 단계적으로 폐지	• 90년 이후	•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로 업계의 자율성, 신속성 확보 • 정유산업의 실질적 자유화 기대